

신 해양시대 해양 거점 대학 KMOU
**2027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국립한국해양대학교
NATIONAL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신 해양시대, 해양 거점대학 KMOU

CONTENTS

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I. 전형 안내

1. 전형일정	3
2. 모집인원	4
3. 지원자격	5
4. 전형요소 및 배점	8
5. 합격자 선발 방법	9
6.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0
7. 원서접수	11
8. 제출서류	13
9. 지원자 유의사항	17

II. 지원 서식

[서식1] 입학원서	18
[서식2] 종합기록표	20
[서식3]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22
[서식4] 건강진단서	25
[서식5]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서	27
[서식6]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28

III. 별 표

[별표1] 해사대학 지원자 건강진단 판정기준	30
[별표2] 입학관련 학내 전화번호	31



I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26. 7. 6.(월) 09:00 ~ 7. 10.(금) 18:00	www.uwayapply.com www.kmou.ac.kr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2026. 7. 6.(월) 09:00 ~ 7. 20.(월) 18:00	【제출처】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입학본부	■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지원자격 심사 결과 발표	2026. 8. 6.(목) 10:00	입학정보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로 확인)
면접고사 방법 안내	2026. 8. 6.(목) 14:00	입학정보 홈페이지	
면접고사	2026. 8. 20.(목) 14:00	모집단위별 지정 장소	■ 응시자 편의를 고려하여 비대면 면접고사 실시
합격자 발표	2026. 9. 10.(목) 14:00 예정	■ 발표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www.kmou.ac.kr) ■ 등록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www.kmou.ac.kr) 합격자 <u>온라인</u> <u>'문서등록'</u>	■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로 확인) ■ 별도의 예치금이 없으며, 온라인 '문서등록'으로 대신합니다. ■ 기한 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격자 등록 (문서 등록)	2026. 12. 21.(월) 09:00 ~ 12. 23.(수) 16:00		
총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차		
	2차		
	3차		
	4차		※ 4차 총원합격자 발표는 개별 전화 통지합니다.
최종등록 (등록금 납부)	2027. 2. 10.(수) 09:00 ~ 2. 12.(금) 16:00	농협 전국 각 지점	■ 기한 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의 일정은 우리 대학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모든 사항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www.kmou.ac.kr) 또는 입학정보 홈페이지(www.kmou.ac.kr/ipsi/main.do)를 통하여 공지하므로 원서 접수 전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총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우리 대학교의 차수별 합격자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가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 후 최종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포기로 처리합니다.

II 모집인원

(단위: 명)

단과 대학	계 열	모 집 단 위		재외국민 (입학정원 2% 이내)		전 교육과정 이수자 복 한 이 탈 주 민
				최대선발 가능인원	모집인원	
해 사 대 학	자 연	항해융합학부		17	약간명 (10명 이내)	약간명
		기관시스템공학부		19		
		해양경찰학부		4		
		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		6		
		해기자율전공학부		-		
해 양 과 학 기 술 대 학	자 연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4	약간명 (4명 이내)	약간명
		해양공학과		2		
		에너지자원공학과		3		
		해양건축공학과		4		
		해양과학융합학부	해양환경학전공	2		
			해양생물공학전공 / 수산바이오공학전공			
	예체능	해양스포츠학과		2		
	해 양 공 과 대 학	자 연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	4	약간명 (8명 이내)
냉동공조공학전공				3		
전자전기정보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3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3		
			나노반도체공학전공	4		
			전파모빌리티융합공학전공	3		
			데이터사이언스전공	2		
인공지능공학부			지능제어시스템공학전공	2		
			컴퓨터공학전공	2		
			물류시스템공학과		3	
환경공학과			2			
토목공학과			2			
첨단소재공학과			3			
해 양 인 문 사 회 과 학 대 학		인 문 · 사 회	해운경영학부		4	약간명 (5명 이내)
	해사법학부		3			
	국제무역경제학부		5			
	국제관계학과		2			
	해양행정학과		2			
	해양영어영문학과		2			
	동아시아학과		2			
	인문사회자율전공학부		2			
	합 계				27명 이내	

- ※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해양공학과, 해양신소재융합공학과 3·4학년 학생은 미음R&D특구 산업단지캠퍼스에서 수학하게 되며, 각종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해사대학 해기자율전공학부 입학생은 해사대학 전 학부 및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학부별 배정인원은 해사대학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 ※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인문사회자율전공학부는 모집단위에서 2개 학기 이수 후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내 희망하는 학부(과) 입학정원의 150%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항해융합학부와 기관시스템공학부는 2028년도 기준(2027학년도 입학자 기준) 교과과정이 설치된 모집단위입니다.
- ※ 모집단위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 후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6) 학년(Academic Year)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해당국의 학제 등 고려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를 1년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7) 부모 및 학생의 출입국 관련서류, 국외근무자 재직 관련 서류의 위·변조 등이 확인되면 관계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입학 후에라도 입학을 취소함
- 8) 복수국적자인 경우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 9) 기타의 경우는 모집요강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지원자격서류심사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함

③ 지원자격별 세부 인정기준

1) 재외국민

-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국외근무·사업·영업·유학연수를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 분	내 용
국외재학기간	⇒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마다 3/4이상 •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마다 2/3이상 * 학생은 반드시 부모 모두와 함께 동일국가에 체류·거주 하여야 함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구 분	내 용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유학연수를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개인이 유학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자는 지원 불가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재학기간	•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 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구 분	내 용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외국학교 인정 기준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함
-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2) 전 교육과정 이수자(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국외 1개국 내 학년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국외에서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 간의 차이 연수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3) 북한이탈주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근무기간, 체류기간 및 국외재학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하며 지원자격 해당기간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교 지원자격 서류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전쟁 등 국가별 상황으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IV

전형요소 및 배점

① 전형요소 및 배점

계열 구분	전형요소(면접고사)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가산점	비 고
전 계열	100점	5점 이내	

② 면접고사

- 가. 대상자: 지원자격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자
- 나. 면접방법: 비대면고사 실시(답변영상 촬영 후 제출)
- 문제공개 및 답변제출: 2026. 8. 6.(목) ~ 8. 18.(화)
 - 면접고사: 2026. 8. 20.(목) 14:00
 - 면접고사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우리 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 공고
(www.kmou.ac.kr/ipsi/main.do)
- 다. 평가방법 및 내용
-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인 성	리더십 및 공동체 의식	25	
	자기극복의지	15	
전공적합성	전공관련 기초지식	20	
	전공에의 열정	20	
발전가능성	학업계획 및 미래설계	20	
합 계		100점	

- 면접위원 3인이 지원자 1인을 평가함
- 면접고사 점수는 면접위원 평가점수를 평균함
- ※ 면접고사 점수는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예, 60.15 ⇒ 60.2)

③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가산점

- 가. 대상자: 재외국민(입학정원의 2%이내 선발) 지원자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를 제출 한 자
- 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만 유효함
- 다. 가산점 부여: 4급 이상부터 등급에 따라 차등 부여(6급-5점, 5급-3점, 4급-1점)

④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따라 감점

학교폭력 조치사항	1~3호	4~7호	8호	9호
감점 (만점 기준: 100점)	만점 대비 3%	만점 대비 5%	만점 대비 7%	만점 대비 10%
감점점수	3점	5점	7점	10점

※ 단, 학교폭력에 따른 감점처리는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등)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반영함

① 합격자 선발 기준

가. 재외국민(국외근무자 자녀)

- 면접고사 점수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① 단과대학별-모집단위별 고득점 순으로 선발
- ② 모집 단위별 상한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③ 단과대학별-모집인원에서 미충원 인원 발생 시 타 단과대학에서 선발·충원

- 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부터 석차순으로 예비 순위를 부여한 후 결원 발생시 후보자 순으로 모집단위별 최대선발 가능 인원 내에서 선발

나.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 면접고사 점수를 60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전원 합격자로 선발

② 불합격 처리 기준

가. 면접고사 취득점수가 60점미만(과락)인 자

나. 면접 동영상 기간내 미제출자

다. 제출기간 내 구비서류 미제출자

라. 지원자격 심사결과 부적격자

※ 해사대학 지원자의 경우 선원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선원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③ 동점자 처리 기준

가. 1순위 : 인성 평가점수 상위자

나. 2순위 : 전공적합성 평가점수 상위자

다. 3순위 : 발전가능성 평가점수 상위자

①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최종 합격자: **2026. 9. 10.(목) 14:00(예정)**

- 추가 합격자: 전형일정 참조

나. 방법: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mou.ac.kr>)에 공고

②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및 등록금 납부

가.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의 온라인 문서 등록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등록버튼' 클릭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없음)

구 분	일 정
온라인 문서등록	2026. 12. 21.(월) 09:00 ~ 12. 23.(수) 16:00
충원합격자 발표 및 온라인 문서등록	2026. 12. 24.(목) 10:00 ~ 12. 30.(수) 22:00
등록금 고지서 출력	2027. 2. 10.(수) 09:00 (예정)
등록금 납부	2027. 2. 10.(수) 09:00 ~ 2. 12.(금) 16:00

나. 온라인 문서 등록, 고지서 출력, 등록금 납부 등은 합격자 발표 시 상세히 안내함

다. 지정된 등록 기간 내 온라인 문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③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 내 온라인 문서 등록 및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다. 온라인 문서 등록을 완료하더라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합격이 취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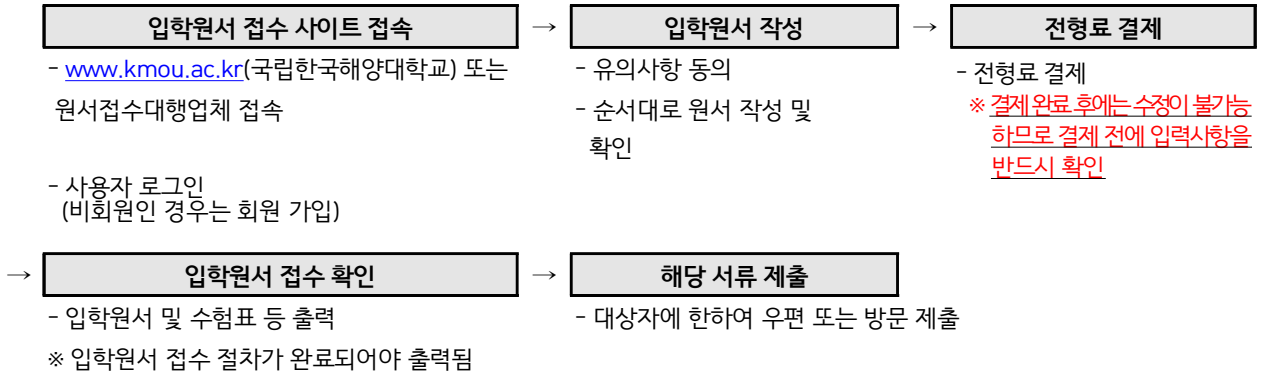
라. 본교에 합격하고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에 등록포기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포기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함

① 원서접수 일정

가. 접수기간 : 2026. 7. 6.(월) 09:00 ~ 2026. 7. 10.(금) 18:00

나.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② 원서접수 절차



③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전에 『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지원자격, 전형일정, 전형료,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은 **2026. 7. 10.(금) 18:00까지**이며, 모든 기재 사항을 입력하고 **전형료를 결제해야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다. 접수된 입학원서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합니다.(단, 접수완료 이전에는 수정 가능)

라. 원서 접수 시 입력 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 사항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마. 원서 접수 시 기재하는 ‘연락처’는 지원자와 연락이 가능한 **국내 연락처**를 입력하여야 하며, 3회 통화시도에도 **연락이 안 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였더라도 **모든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전형료

가. 전형료 내역

구 분	전 형 료				접수 수수료
	일반관리비 (1단계)	면접고사료 (2단계)	감면액	계	
전 모집단위 (북한이탈주민 제외)	34,000원	20,000원	-	54,000원	우리 대학교에서 부담
북한이탈주민	34,000원	20,000원	54,000원	0원	

나. 전형료 반환

- 1)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형료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합니다.
 - 천재지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전형료 전액 반환
 - 1단계 불합격자(지원자격 결격자, 서류 미제출자) : 면접고사료 반환
 - ※ 면접고사에 단순 사유로 결시하는 경우는 면접고사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2) 전형료 반환 사유, 금액 및 방법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릅니다.
- 3)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의하여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입학전형 응시자에게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 4) 입학전형료를 반환 받기 위해 원서접수 시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① 반환 대상자가 입력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
 - ②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입학원서 작성 시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 오류 시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우리 대학교는 대학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
 - 지원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추가)연락처, 이메일, 학생부 및 검정고시 자료, 수능 성적, 환불계좌
 - 학교정보: 최종학력,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고교 FAX번호
-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 입학, 장학, 학사, 통계 업무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함

제공받는 곳		제공정보	목적
국립 한국 해양 대학교	대학본부 및 학부(과)	지원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성적자료, 고교명 등	학적생성, 학력조회, 장학생선발, 통계, 안내문자 발송 등
	대학IR센터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통계, 조사·진단 안내 등
	생활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적 등	생활관생 선발, 기타 안내
	평생교육원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어학강좌 프로그램 안내
제3자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내용 등	위반자 조회 등

- 합격자(등록자)의 개인정보는 학사정보, 취업정보, 학술정보, 공학인증, 학교 홈페이지 회원정보, 웹메일 사용자 정보, 웹디스크 사용자 정보, 진단·조사 안내, 휴대폰 문자서비스 정보로 활용함

1 제출서류 안내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공통서류	1.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	인터넷접수 후 출력
	2. 종합기록표(학생용)	[별지 제1~2호 서식]
	3.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3호 서식]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4. 선원건강진단서 제출(해사대학 지원자에 한함)	[별지 제4호 서식]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5.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서(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5호 서식]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재외국민 (국외근무자 자녀)	1.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재학기간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2.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3.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4. 종합기록표(부모용)	
	5. 가족관계증명서(학생기준) ^{*(주1)}	
	6.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별지 제6호 서식]
	7.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8. 여권사본(부모, 학생)	
	9.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10.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주2)}	
	11.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12.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현지 취업자
	13.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주3)}	현지 자영업자
	14.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에 한함)	
	15.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소지자에 한함)	
전 교육과정 이수자	1.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재학기간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2.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3.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별지 제6호 서식]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학생)	
	6. 신분증(여권 등) 사본(학생)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3.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주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외국민 표기가 된 주민등록등본(등본에 가족 모두 없는 경우에도 증명서 제출)

부모가 이혼(사망)한 경우 또는 개명하였을 경우 해당 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주2) 재직(경력)증명서상 해외 파견(근무)기간이 연월일까지 명시되어야 하며, 재직(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국 법인(지사/공장)명은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에 나오는 법인(지사/공장)명과 일치되어야 함 (재직기관의 본사 인사권자 발행)

*(주3) 세금납부사실증명서는 외국정부기관 발급서류만 인정되며 비과세 사실증명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주4)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해외지사(사무소) 설치인증서는 반드시 본사나 외국환은행의 원본대조필이 있어야 하며, 복사본은 인정하지 아니함. 또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는 파견(근무)기간 이전에 수리신고된 것이어야 함. 예를 들어, 재직증명서상 파견기간이 “2022년 4월 1일 ~ 현재(계속)” 이라면, 신고수리일이 “2022년 3월 ○○일” 인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의 서류가 필요함

②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2026. 7. 6.(월) 09:00 ~ 2026. 7. 20.(월) 18:00

※ 모든 서류는 **서류 제출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이후 도착된 서류는 접수 처리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장소 : 우)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입학본부

다. 제출방법 : 발송용 봉투라벨(접수완료 후 출력가능)을 봉투에 붙여 등기우편, 택배, 방문 제출

③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 등의 원본대조확인(원본대조필)을 받아 제출하거나 원본을 함께 지참하여 우리 대학 입학본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원본 서류 반환 요구 시에는 우표를 붙인 회송용 봉투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 사본 제출자는 **합격 후 2027. 2. 12.(금)까지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서식3)에 기재된 「작성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입력하시기 바라며,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다.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2026년 6월 6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합니다.

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서류는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마. **국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단,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발급 서류의 경우 학교장 직인으로 갈음함)

바. 초·중·고등학교 과정 중 국내에서 재학한 기간은 성적증명서 대신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합니다.

사. 재직(경력)증명서상 국외근무기간이 연월일까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아. 세금납부사실증명서는 공공기관 발급서류만 인정되며 비과세사실증명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인세납부이력 대신 개인세금납부 실적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회사명칭이 표기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부모가 이혼(사망)하거나,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모의 이혼(사망) 시**

- 기본증명서(지원자 기준) 추가 제출(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지정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양육권)자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하며, 이혼일 이전까지의 자격 조건은 충족해야 함
- 부모가 재혼한 경우 친권(양육권)자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함
- 친권자 지정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친권자와 미거주시 양육권 확인을 위한 이혼 판결문 또는 협의서 제출

카.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지원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 이중국적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여권 사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여권번호에 기재된 출입국 사실증명서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추가서류 제출 안내

가. 아포스티유 확인서 등

1) 제출대상

- 최종 합격(등록)자 중 해당자
- 원서접수 시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영사확인서) 미제출자
-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영사확인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영사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국외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단,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학교장 직인으로 갈음합니다.

3) 제출방법: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영사확인서 발급문의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02-2002-0251~2)

나. 지원자격 관련 서류

1) 제출대상: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일(2027년 2월 26일까지)** 기간을 포함하여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2) 제출서류: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고교 졸업증명서, 보호자 재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실증명발급·신청서 및 위임장 등 지원자격 관련 서류

- 원서접수 시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졸업증명서는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기한 : 2027. 2. 26.(금)까지

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격 이후에도 지원자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

1. 한 항목이라도 빠짐없이 검진(특수/국외)을 받아야 하며, **공인된 전문의의 선언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또한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 시 불합격 처리함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각 지방 해양수산청에 신고된 특수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각 지방청에 신고 되지 않은 의원 및 보건소는 불가함.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안내는 입학정보 홈페이지 참조)
3. 검사 의사명 및 서명 란에는 의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함
4. 발급 의료기관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함
5. 건강진단서는 2026. 4. 1. 이후 건강진단 실시 및 발급분에 한함
6. 진단서 제출 시 하단에 우리대학 수험번호 및 지원학부를 직접 기재하여야 함
7. **원본을 직접 또는 우편 등기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2026. 7. 20.(월) 18:00까지) 내 미도착 시 불합격 처리하므로 제출기한을 감안하여 사전 검진 실시 요망**
※ 제 출 처 : (우)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입학본부

자주 묻는 질문 Q&A

- Q** 특수, 일반? 국외용, 국내용? 어떤 걸로 검사해야 하나요?
- A** 빈혈, 소변 및 매독검사까지 포함한 **특수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며 **국외용**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특수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 Q** 선원 건강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A**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공지사항 「**해사대학 지원자 건강검진서 및 발급 가능 병원 목록 안내**」를 참고하시고 병원 내원 전에 검사 실시 유무를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목록에 없는 병원이라도 선원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각 지방 해양수산청에 신고된 특수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 병원에서 발급받은 경우라면 유효합니다.
- Q** 사본이나 팩스로 제출해도 되나요?
- A** 안됩니다. 건강진단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Q** 건강진단서에 선원의 서명이 빠진 채 제출했는데 괜찮은가요?
- A** 건강진단서 상에 신청인 내역이 상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 Q** 건강검진 받기 전 진단서 양식을 출력해서 병원에 가져가야 하나요?
- A** 선원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에서는 진단서 양식을 다 보유하고 있어 검사만 받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집요강의 진단서 양식은 본인이 발급받은 진단서의 양식과 맞는지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 Q** 건강진단서 발급이 늦어져서 먼저 팩스로 보내고 제출기한 이후 원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 A** 안됩니다. **제출마감일[2026. 7. 20.(월)] 18시까지 원본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하므로 사전에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Q** 건강진단서는 기한 내 제출하면 진단서 제출 요건을 충족한건가요?
- A** 아닙니다. 기한 내 제출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공인된 전문의의 선언이 모두 적합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Q** 제출 후 도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A** 네.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건강진단서 제출서류 확인**」을 통하여 발송 후 2~3일 이내 조회 가능합니다.

- ① 모든 지원자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하여야 합니다.
- ② 원서접수 후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모집단위 또는 지원유형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③ 구비 서류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모집요강에서의 요구 사항 불이행, 주소의 불명, 연락 두절, 합격자 명단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 취소 등)은 지원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④ 제출서류가 우편 배달사고 등의 사유로 제출 마감일까지 도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우리 대학교가 책임지지 아니하며,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 ⑤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⑥ 합격통지서, 합격자 유의사항, 등록금납부고지서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www.kmou.ac.kr)에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⑦ 신입생은 입학년도 1학기 중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다만, 병역의무 수행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
- ⑧ 예비합격후보자는 원서상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입학원서 변경요청서」를 제출 후 우리 대학교 입학본부(051-410-4776~9)로 연락하여야 하며, **충원합격자(4차 이후) 통지 시 3회 통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대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⑨ 입학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서류의 위·변조, 대학입학전형 지원 방법 위반 등)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며, 입학전형에 위조 및 변조 등 거짓 자료를 발견한 경우 지원자가 지원한 타 대학에 이 사실이 공유될 수 있으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 ⑩ 대학입학전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⑪ 해사대학 입학예정자는 일정기간 승선생활 적응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⑫ 입학전형과 관련한 변경 및 추가사항 등 모든 사항은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으며, 우리 대학교 입학홈페이지 (www.kmou.ac.kr/ipsi/main.do)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⑬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⑭ 서류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본부 1층 입학본부 입학과 (우편번호 49112)
 - 전화번호: (051) 410-4776~4779, FAX : (051) 405-0509

대학입학전형 지원방법 위반자 입학 취소 안내

1. 타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의 수시모집 전형을 포함하여 **최대 6개 이내**의 전형에 지원 가능하며, 6개 전형이란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합니다.
 - ※ 단,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북한이탈주민, 전교육과정 이수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전형과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은 제외
 -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처리 됩니다.
2.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 단,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북한이탈주민, 전교육과정 이수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전형과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은 제외
3.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확인예치금 납부 및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포함)수시모집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1개 대학 외 나머지 대학의 등록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 우리 대학교 등록포기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각종 서식 및 별표

〈서식 1〉

※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인터넷 원서접수 시 인터넷 상으로 입력

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원서										수험번호	
지원유형	○ 재외국민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위	대학						학부(과)				
지원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국적				
	출신고교	년 월 일		학교(졸업예정□, 졸업□)							
	출신고교직국										
지원자 연락처	전화번호	※연락가능 전화번호			휴대폰	※연락가능 휴대폰			E-mail	※연락가능 E-mail	
	주소	※연락가능 국내 주소									
추가 연락처	보호자1				보호자2				보호자3		
국내학교 해당과정	재학기간				입학사양				출신학교		
							주 소		전화번호	소재국 (도시)	
	초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학교 졸업							
	중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학교 졸업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학교 졸업(예정)								
보호자	성명		국외 체류기간			국적		근무처		연락처	
	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모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환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본인의 위 기재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귀 대학교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APPLICATION TICKET

(수 험 표)

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Number (수험번호)	※
Name (성 명)	
College (지원대학)	대학
Division (Department) [지원학부(과)]	학부(과)
SAMPLE 온라인 입력 PHOTO (사 진) (3.5cm×4.5cm)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주의사항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에 접속하여 다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1〉

종합 기록 표

모집단위	대학	학부(과)	수험번호	성명	
지원자격	☐ 재외국민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 지원자 학력사항 기재(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순서에 의해 수학한 모든 학교를 기재)

학 교 명	재학기간		학교소재지		해당하는 학년, 학기에 줄(< ----->)로 표시																	
	기 간	재학연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재학기간		년 개월	외국 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 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지원자: 2026. .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2>

종 합 기 록 표

모집단위	대학	학부(과)	수험번호	성 명
------	----	-------	------	-----

☐ 보호자 외국 체류기간 기재(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에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기재)

구 분	외국 체류기간		소재지		보호자의 외국 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학년. 학기에 줄(<----->)로 표시																											
	기 간	체류년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父) 성 명 ()	. . . ~ . . .	년 개월	SAMPLE 온라인 입력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계	년 개월																														
모(母) 성 명 ()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계	년 개월																														

※ 보호자의 근무기간은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입력

※ 전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서식 2-2>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지원자: 2026. .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지원자 정 보	지 원 자 격	☐ 재외국민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모 집 단 위		수험번호 성 명

연번	활동명	활동기간 (년.월.일. ~ 년.월.일.)	활동내용	활동(발행)기관
1				
2				
3				
4				
5				
6				
7				
8				
9				
10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작성방법

1. 작성대상: 외국소재 중·고등학교 출신자
※ 단,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에서 수학한 기간은 제외함
2. 활동기간: 국외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활동에 참여한 시기
3. 활동내용: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에 준하는 활동 (※ 반드시 작성 유의사항의 제한 내용 확인)
- 활동내용 칸 작성 시 활동(발행)기관명 기재 금지
4. 작성분량: 1개 활동 당 50자 이내 (각 연번에 1개 활동, 최대 10개 활동 작성 가능)
5. 증빙자료: A4용지 단면 기준 3 페이지 이내 제출 가능 (축소/양면 복사 금지)

□ 작성 유의사항

1. 본 서식은 반드시 사실에 기초하여 본인이 작성합니다.
2.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여야 합니다.
4.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공인어학성적 및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가.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

나.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토너먼트,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등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등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IET 국제 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 논술대회 등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서류심사 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 시 “서류심사 불합격” 처리
6.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에 따른 학생부 주요항목 내 변경 사항*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 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 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금지 항목]

-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
- 다.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
- 라.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 마.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 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 사. 도서출간 사실
-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사실
- 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 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 카.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 파.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하. 자격증 명칭 및 취득사실

* 위 내용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을 발췌한 내용으로 이하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중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른 학생부 주요항목 내 변경 사항]

- 가.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 나.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 다.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 라.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 마. 독서활동 대입 미반영

7.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본인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숙지했으며, 해당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_____(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4>

건 강 진 단 서 CERTIFICATE OF MEDICAL EXAMINATION				
신원인 (Applicant)	성 명(Name)		성 별(Sex)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건강진단결과 (Results)	신 장(Height)	cm	혈 압(Blood Pressure)	
	체 중(Weight)	kg	혈 액 형(Blood Type)	
	청 력(Hearing)	좌LT : 우RT :	시 력(Visual acuity)	좌LT : 우RT :
	색 각(Colour Vision)		흉 위(Circumference of Chest)	cm
	혈액 / 조혈계 (Blood disorders)		감염병(Infections)	
	정 신 계 (Mental disorders)		피 부 질 환 (Skin disorders)	
	순 환 계 (Cardiovascular system)		신 경 계 (Nervous system)	
	생 식 및 비 뇨 계 (Genito-urinary conditions)		소 화 계 (Digestive system)	
	당뇨(Diabetes)		간장(Liver)	
	호흡계 및 흉부X선검사 (Respiratory disorders & Chest-X Ray)			
	특수건강진단에 한함 (Special Examination Only)		빈 혈(Anemia)	
			소변 및 매독(Urine and Syphilis)	
건강진단서 작성의견 (Declaration of the recognized medical practitioner)	검사 시 피검자 신분 확인 여부(Confirmation that identification documents were checked at the point of examination)		[]예(Yes) []아니오(No)	
	청력 충족 여부(Hearing meets the standards in the section A-1/9?)		[]예(Yes) []아니오(No)	
	보조기 미착용시 청력 충족 여부(Unaided Hearing satisfactory?)		[]예(Yes) []아니오(No)	
	시력 충족 여부(Visual acuity meets the standards in the section A-1/9?)		[]예(Yes) []아니오(No)	
	색각 충족 여부(Colour Vision meets the standards in the section A-1/9?)		[]예(Yes) []아니오(No)	
	최근 색각검사일(Date of last colour vision test) 년 월 일			
	경계업무 적합성(Fit for lookout duties)		[]예(Yes) []아니오(No)	
	건강에 제한이나 제약사항이 있는가?(Any limitations or restrictions on fitness?)		[]예(Yes) []아니오(No)	
	제한이나 제약사항 기술(If "Yes", specify limitations or restrictions)			
	선원이 승선 후 승무가 부적합하게 되거나 타인의 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증상이 있는가? (Is the seafarer suffering from any medical condition likely to be aggravated by service at sea or to render the seafarer unfit for such service or to endanger the health of other persons on board?)		[]예(Yes) []아니오(No)	
건강진단 실시일(Date of Exam)		년 월 일		
유효기간만료일(Date of Expiry)		년 월 일		
선원의 서명 (Seafarer's signature)		검사 의사명 및 서명 (Name and Signature of Examiner)		
본인은 이 진단서의 내용과 STCW 협약 A-I/9조 제6항에 따라 진단서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I have been informed the content of the certificate and of the right to review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of section A-I/9 of the STCW Code)				
「선원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STCW 협약과 해사노동협약의 관계 기준을 충족하였기에 이 건강진단서를 발급합니다.(It is issued, under the article 54-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eafarers' Act, to meet the requirements of both the 1978 STCW Convention as amended an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발급일(Date of Issue) : 년 월 일				
발급 의료기관명(Official name of issuing Authority) 직인(Stamp)				
(전화번호)				
※ 수험번호 및 지원 학부(과) 기재요		수험번호	지원 학부(과)	

※ 비 고

- ① 한 항목이라도 빠짐없이 검진을 받아야 하며, 공인된 전문의의 선언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② 검사 의사명 및 서명란에는 의사의 성명 기재 후 반드시 서명함
- ③ 발급 의료기관명에는 의료기관명 기재 후 반드시 날인함
- ④ 건강진단서는 **2026. 4. 1. 이후** 건강진단 실시 및 발급분에 한함
⇒ 검진 후 진단서 발급 소요기간이 최대 7일 이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전 검진 완료 권장
- 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각 지방 해양수산청에 신고된 특수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건강진단서 국외 발급자는 공증 받은 경우만 인정)
- ⑥ 각 지방청에 신고 되지 않은 의원 및 보건소는 불가함
⇒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정보 공지사항 참조

지원자 격 미충족 사유서

수험번호		성 명	
지원학부(과)		지원자격 구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 자격 미충족 사례가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 외 제출서류에 대한 부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 증빙자료 :

위 기재 사유는 틀림이 없으며, 허위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보호자 :

(인)

본 인 :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6>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25. 5. 30.>

(앞쪽)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약칭: 사실증명신청서, 약호:A322)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Free online application available at the government website (www.gov.kr) for the issuance of your own Certificate of Fact. Thos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will be required to present only their ID cards without having to complete this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 포함 ☐ 미포함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체류지 영문표기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address in English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 포함 Yes ☐ 미포함 No 체류지 영문표기 여부 Address in English ☐ 표기 Yes ☐ 미표기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락처 (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〇〇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〇〇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〇〇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〇〇 Si · Gun · Gu or Eup · Myeon · 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년(Year) 월(Month) 일(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Consent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본인은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hereby consent to the electronic verification of the applicant's required documents, in relation to the exemption of fees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through the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by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n case of refusal to consent to the verification by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relevant documents in person.

신청인(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앞쪽 신청인의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전화번호란에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각각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가.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Where a principal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1)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2)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only when the spouse is deceased and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of those listed in the category 1)]

나.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a non-Korean principal has permanently left Korea:

- An employer of the principal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다.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Creditor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foreigner concerned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7.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은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Records on this certificate only cover the entry/departures from January 1, 1961, for Korean nationals and from January 1, 1979, for Foreigners.

【별표1】

해사대학 지원자 건강진단 판정기준

【관련규정: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 제4항】

검사항목		판정기준
시력		- 항해융합학부, 해양경찰학부, 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 해기자율전공학부는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5 이상 - 기관시스템공학부는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시력을 통합한 교정시력이 0.4 이상일 것
체격		심한 신체의 박약, 심한 흉곽발육의 불량 그 밖에 선박내의 노동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 폐, 늑막, 심장 또는 신장의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을 것
청력		항해융합학부, 해양경찰학부, 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 해기자율전공학부는 두 귀 모두, 기관시스템공학부는 한 귀 이상이 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속삭임을 청취할 수 있을 것. 다만, 선원으로서의 종사경력에 비추어 관련 직무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색각		적, 청, 황, 녹색의 구분이 가능할 것(색각안경 등 교정기구 사용 가능)
운동기능		모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손가락·손·팔뚝 또는 신체 각 부위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결손이 없을 것. 다만, 장애의 정도가 경증이거나 보조기를 착용한 경우에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병후쇠약		병후의 쇠약에 따라 일정기간내의 승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혈당		공복시 125 mg/dl 이하일 것
간장	SGOT	50 IU/L 이하일 것
	SGPT	45 IU/L 이하일 것
C.B.C (빈혈)	RBC	4.2~6.3
	Hb	남자 12.0 이상, 여자 10.0 이상
	Hct	36.0~52.0
	MCV	79.0~96.0
	MCH	26.0~33.0
	MCHC	32.0~37.0
	WBC	4.0~10.0
RPR(VDRL) (매독검사)		
소변검사		

※ 비고

(1) 검진 의사는 정상기준치 및 질병의 경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2) 위 표의 검사항목 중 시력과 관련하여 두 눈 중 최소한 한쪽 눈의 경우에는 안구질환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별 표2】

입학관련 학내 전화번호

☎ 주요행정부서

구 분	안 내 부 서	전화번호(지역번호: 051)
대학입학전형	입학본부 입학과 입학관리팀	410-4777~9, 5203
	입학본부 입학과 입학정책팀(입학사정관)	410-5361, 5364
	입학본부 입학과 입학홍보팀	410-4776, 5362
학사(휴학, 전과 등)	교무처 학사과	410-4714(휴학), 4018(전학·전과)
장학금, 학자금 대출	학생처 학생복지과 장학지원팀	410-4028~9
등록금	사무국 재정과	410-4041
기숙사	승선생활관(해사대학 학생)	410-4193, 4650, 4652
	학생생활관	410-4096~7

☎ 단과대학 및 학부(과)

단과대학	학부(전공).학과		전화번호(지역번호: 051)
해사대학 (행정실: 410-4176, 4183, 4189, 4194)	항해융합학부		410-4230, 4270, 4640
	기관시스템공학부		410-4250, 4830, 4660
	해양경찰학부		410-4225
	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		410-5390
해양과학기술대학 (행정실: 410-4743, 4224)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410-4300
	해양공학과		410-4320
	에너지자원공학과		410-4680
	해양건축공학과		410-4580
	해양과학융합학부	해양환경학전공	410-4610
		해양생물공학전공	410-4750
		수산바이오공학전공	
	해양스포츠과학과		410-4790
해양공과대학 (행정실: 410-4744, 5214)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	410-4290
		냉동공조공학전공	410-4360
	전자전기정보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410-4410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410-4310
		나노반도체공학전공	410-4780
		전파모빌리티융합공학전공	410-4420
		데이터사이언스전공	410-4370
	인공지능공학부	지능제어시스템공학전공	410-4340, 4570
		컴퓨터공학전공	
	물류시스템공학과		410-4330
	환경공학과		410-4415
	토목공학과		410-4460
	첨단소재공학과		410-4350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실: 410-4218~9)	해운경영학부		410-4380
	해사법학부		410-4390
	국제무역경제학부		410-4400
	국제관계학과		410-4455
	해양행정학과		410-4730
	해양영어영문학과		410-4590
	동아시아학과		410-4690
	인문사회자율전공학부		410-4434



국립한국해양대학교
NATIONAL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국립한국해양대학교

www.kmou.ac.kr/ipsi/main.do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입학본부

입학관리팀 TEL.051,410,4776~9, 5203 FAX.051,405,0509